

MAY 2022. Issue 162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20만 vs 2

 **The New Customs Study**

06 ... 2022년 상반기 관세기술 세미나 개최

 **논리로 푸는 HS 사례 -1**

08 ... 고추 가공품의 관세쟁점에 관한 의문

 **논리로 푸는 HS 사례 -2**

13 ... 논리로 푸는 HS 사례 (가정용 가습기)

 **Global Customs Insight**

17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의 對러 제재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0 ...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안내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
 판단하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5월 9일 정오에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게시판에 공개된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도 있으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에게 직접 탄원하고자 하는 소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의견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기원전 900 여년 이스라엘의 3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지혜로운 왕'이라는 소문도 널리 퍼졌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솔로몬 왕에게 창기 두 명이 나왔습니다. 한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다툰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왕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가짜 엄마를 찾아낸 판결이었습니다. 20 만명의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나 유력한 인사도 아닌 여성, 그것도 창기의 말을 경청한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건강장수도, 부국강병도, 원수멸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는 2 년이 걸리나 경청을 배우는 데는 60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耳順(60 세)가 되어야 비로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에 거슬려 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2022년 상반기 관세기술 세미나 개최'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고추 가공품의 관세쟁점에 관한 의문'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논리로 푸는 HS 사례 (가정용 가습기)'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의 對러 제재'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안내'이며,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입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편을 짜서 목청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축하할 일에 기뻐해주지 않고 슬퍼할 일에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적인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 그 주장에 목소리를 더하고 내 주장이 잘 들리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승리가 아니면 패배입니다. 찬성이 아닌 곳에는 결사반대만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짓밟혀진 이야기들은 땅속에서 어둠 속에서 와글와글 소란스럽습니다. 들어줄 곳을 찾아서 목청이 더 높아집니다.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말하기 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는 시능만으로는 사려가 깊어질 수 없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듣는 시능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제도는 굳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지속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호소는 경청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 호소가 떼를 쓰는 호소나 반대를 위한 반대호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기 아기대신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하는 주장은 호소가 아니라 '떼를 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죽하면 그런 억지를 부렸을까?"를 가늠해보면 이런 호소도 경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잘잘못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한 국민이 서로를 적으로 대하며 거친 소리들을 쏟아내지 않기 바랍니다. 쫓불과 태극기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듣는 마음이 안되더라도 듣는 시능이라도 시작하면 경청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만명도 중요하지만 2명도 중요합니다. 협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2명도 보듬어야 합니다. 잘 듣고, 또 듣고, 더 들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경청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논어(論語), 이청득심(以聽得心);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석문섭(2022. 04.17), '무엇이 지혜인가?' 잠깐묵상,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tWq7bHzCKo>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The New Customs Study

2022년 상반기 관세기술 세미나 개최

코로나와 러·우 전쟁은 천연자원, 식품자원의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기업과 가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기업지원을 위한 관세정책의 변화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관세법인에서 '22년 상반기 관세기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식의 전달보다는 관세원리를 통해 사고의 힘을 기르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세제도를 제안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영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일 시 | 2022.06.09 (목) 15:00 ~ 17:30

진행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진행 (장소: 신한관세법인 본사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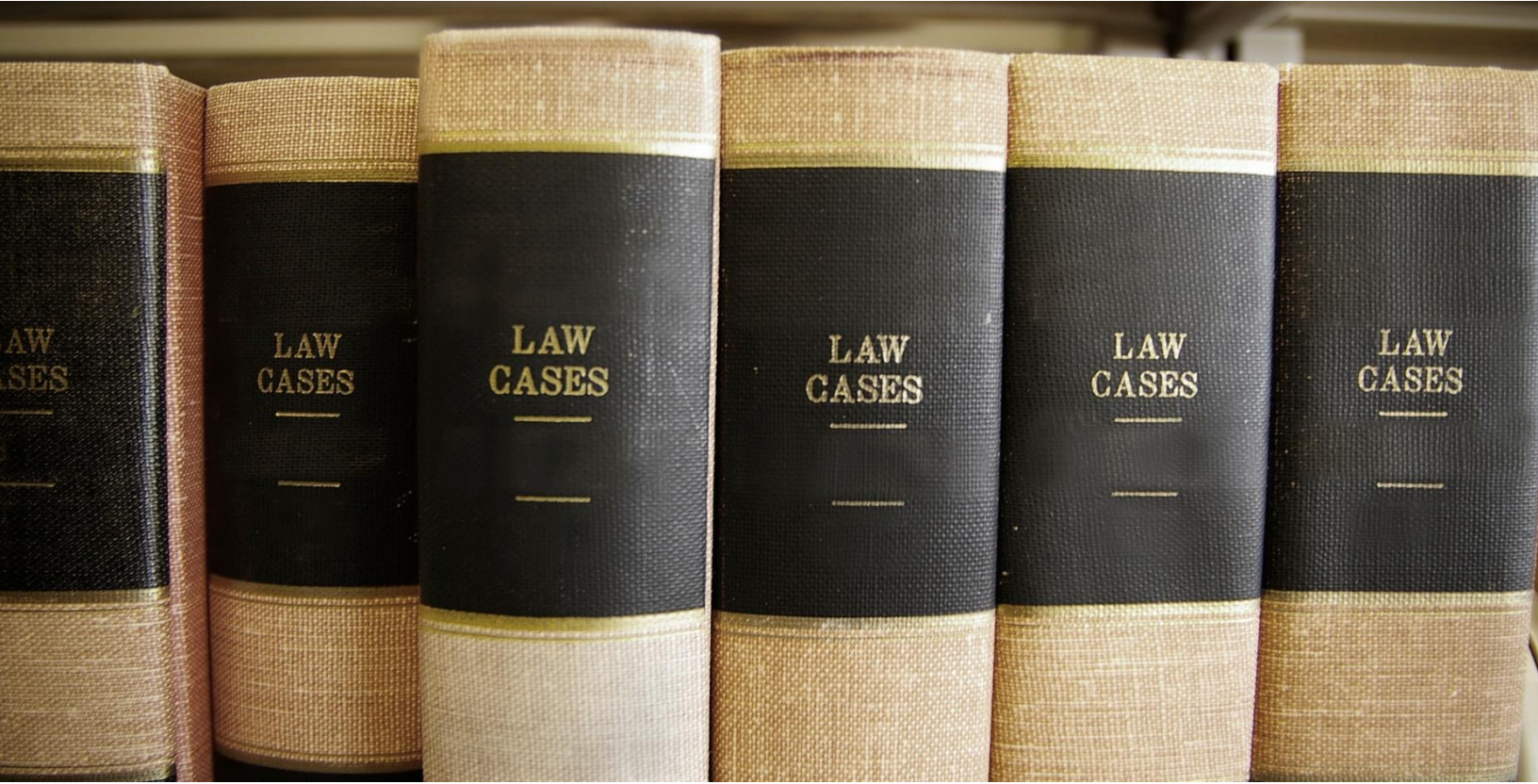
신청방법 |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구글 폼 작성 후 제출

참석비용 | 수출입기업 10만원, 컨설팅업체 20만원 (VAT 포함)

문의 | 신한관세법인 나지원 (☎ 070-4343-7736, jwna@shcs.kr)



교육 내용	시간
<p>주제1. 수출입가격 이익의 <u>급등락시 관세 과세가격 관리방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가격급등락 시기의 이전가격관리방법 (<u>리스크 발생원인</u>과 대응방법) ▪ 최근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결정 판례에 대한 관세평가적 해설 <p><강사: <u>신한관세법인</u> 서영진 전무, 관세사></p>	15:00~ 15:50
<p>주제2. 글로벌의 ESG강화에 따른 관세제도의 변화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탄소국경세</u>의 예상 부과방법과 대상 조사 ▪ 수입물품이 운송연료로 쓰일 경우 과세확정과 운송료의 합리적 과세방안 ▪ 비용과 자원절약을 위한 수리전반출제도 규제완화 방안 <p><강사: <u>신한관세법인</u> 김혜란 팀장, 관세사></p>	16:00~ 16:40
<p>주제3. 새로운 정부의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제도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조물품의 원산지결정과 원산지표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국내 가공물품의 조달규제 완화방안 ▪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세 확대를 통한 기업 지원방안 <p><강사: <u>신한관세법인</u> 전무열 본부장, 관세사 / 서영진 전무, 관세사></p>	16:50~ 17:30



논리로 푸는 HS 사례 -1

고추 가공품의 관세쟁점에 관한 의문

한국인과 떼놓을 수 없는 고추는 HS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 차이가 매우 커서 쟁점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건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10 분의 1 인 27%, 고추장아찌(채소조제품)는 20%, 고추장(소스)은 45%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고추류에 속하는 피망은 품목분류에 있어 고추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됩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최근 피망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프레드가 제 2103 호(소스)로 결정하였는데, 세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추류의 가공상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혜란

팀장/관세사
hr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법인심사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결정물품은 구운 피망으로 만들어진 스프레드로 샌드위치나 빵에 발라먹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본 결정에서 결정물품이 제 2103 호(소스)로 결정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용도 측면) 제품이 빵 등에 발라먹는 용도나 샐러드의 소스, 수육, 로스트 비프의 소스로 사용되고 현품 표시사항에 '소스'로 기재된 점과 ▲ (재료 측면) 잘게 부순 피망(주재료)은 향신료(제 0904 호)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고추의 품목분류는 가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선 고추는 제 0709 호에 분류되는데 이를 건조/파쇄/분쇄하면 제 0904 호(건고추)로 분류됩니다. 신선고추로 조제하면 제 2005 호(채소조제품)에 분류되는 반면, 제 0904 호의 건조/파쇄/분쇄고추로 조제하면 제 2103 호(소스)로 분류됩니다. 제 7류 주 4에서는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 0904 호). ”로 정하고 있어 잘게 부순 고추류는 제 0904 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HSK	품명	Description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10 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Sweet peppers (bell type)
90 00	기타	Other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Pepper of the genus Piper; dried or crushed or ground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2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
21 00 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Dried, neither crushed nor ground
22 00 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rushed or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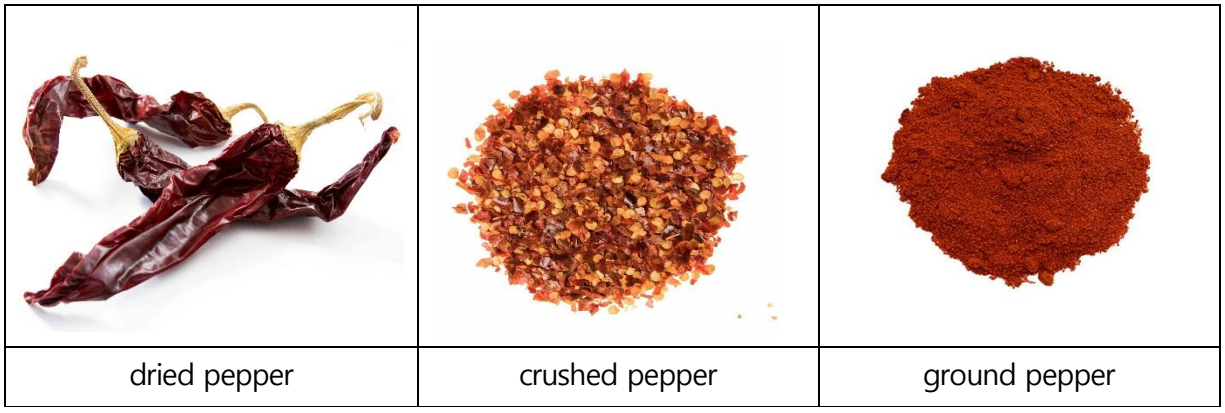
결정물품은 (신선)피망을 잘게 자른 후 해바라기유, 와인식초 등 다른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만든 제품인데, 본 결정에서는 피망이 “잘게 부순” 형태이기에 주재료가 제 0904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 0904 호를 주재료로 하는 조제품이기에 제 2103 호로 결론이 이어집니다.

잘게 부순 고추류는 제 0904 호에 분류된다고 관세청 고시인 HS 해설서와 호의 용어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문보다 우선되는 영문을 살펴보면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Chapter 07. Notes.

4. However, **dried or crushed or ground**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are excluded from this Chapter (heading 09.04).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 0904 호).



우리나라 관세청 고시인 HS 해설서에는 ground pepper 를 '잘게 부순' 고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게 부순' 고추보다는 '뺀' 고추가 ground pepper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적합할 것입니다. '뺀다'는 물기가 없는 것을 찢어서 가루를 만드는 가공이기에 건조를 전제로 하는 후단 가공을 설명하기에 더 적절합니다.

제 07 류의 채소는 얇게 썰어도(sliced)도 여전히 제 07 류에 분류되는데 이는 물품이 온전한 상태로 제시된 것인지 썰은 것인지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추를 얼마나 잘게 썰었는지는 fresh 고추(제 0709 호)와 crushed 고추(제 0904 호) 의 분류기준점으로 삼기엔 모호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재료를 제 0904 호로 판단한 것이 결정물품의 주요한 분류사유 중 하나였기에 (생)피망을 잘게 만든 것을 잘게 부순(ground)것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충분히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조국이자 수출상대국은 제 2005 호 채소조제품으로 결정한 물품을 우리나라만 제 2103 호 소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영문 주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 [2022-03]

1. 품명

- ① ORGANIC RED PEPPER AND AUBERGINE SPREAD; PF1705759 (유기농 홍피망 가지 스프레드),
- ② ORGANIC YELLOW PEPPER SPREAD; PF1705760 (유기농 노랑피망 스프레드)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①물품) 구운 채소(홍피망 72%, 가지 14%) 86%, 해바라기유와 와인식초, 마늘, 정제소금, 오레가노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②물품) 구운 피망 81%, 해바라기유와 와인식초, 정제소금, 마늘, 고추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빵 등에 발라 먹거나 소스 등으로 활용



3. 결정세번

2103.90-9090

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2103 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전(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 20 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일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 9 류 주 제 1 호에서 제 0904 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혼합물은 제 0904 호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분류에 영향은 없지만, 그 밖의 혼합물은 제 9 류에 분류하지 않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제 2103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2 종은 잘게 부순 고추류(피망)에 해바라기유, 와인식초, 마늘, 소금,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빵 등에 발라먹거나 소스로 사용되며, 포장상 현품표시 사항에도 소스(살균제품)로 식품유형을 표기하고 있고, "...샐러드의 소스, 수육, 로스트 비프의 소스"로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제 2103 호의 소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본건 물품 2 종은 채소인 '피망'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제 2005 호(채소 조제품)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 20 류 주 제 3 호에서 "제 2005 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 7 류나 제 1105 호·제 1106 호(...)의 물품으로서,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7 류 주 제 4 호에서는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 0904 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제 7 류의 피망을 잘게 부순 형태는 제 0904 호의 물품이며, 구웠다고 하더라도 잘게 부순 고추류는 채소의 특성에서 향신료(제 9 류)의 특성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주원료로 제조된 물품은 제 2005 호의 '채소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추류를 주성분으로 한 소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제 2103.90-9090 호에 분류함



논리로 푸는 HS 사례

논리로 푸는 HS 사례 (가정용 가습기)

1. 개요

가습기란 수증기를 발생시켜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전기기구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는 작동원리에 따라 초음파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로 물을 미세하게 쪼개어 분리된 물방울을 통해 가습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화식 가습기는 가습기 내부의 필터에 물을 입혀 작은 입자로 증발시키는 방식입니다.

물탱크 용량이 큰 가습기(통상 1L이상)의 경우 상기의 각 작동방식에 따라 발생된 습기를 외부로 분출하기 위해 모터로 구동되는 팬을 장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반면 물탱크 용량이 작은 미니가습기(통상 1L 이하)의 경우 통상 발생된 증기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모터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초음파 방식으로 수증기를 발생시키며, 발생된 수증기는 모터의 작동 없이 내부 압력으로 인해 외부로 방출됩니다.

하기의 정보를 기초로 하기의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품목분류 하겠습니다.

<제품1>

- 품명 : USB MINI HUMIDIFIER
- 물품설명 : 진동자의 초음파 진동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를 분무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가정용 가습기, 전동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음
- 규격 : (W)111×(H)147×(L)86mm, 중량 300g / 물탱크 : 420ml

<제품2>

- 품명 : 가습기
- 물품설명 : 진동자에 의한 초음파식으로 만들어진 수증기를 팬의 (모터)구동으로 외부로 분무시켜 주는 가정용 가습기
- 규격 : (W)250mm×(H)390mm×(L)245mm, 중량 3.1kg / 물탱크 : 6L

2. 품목분류의 검토

1) 고려 대상 HS CODE

가습기가 분류될만한 HS CODE는 하기와 같습니다.

HS	8479.89	8509.80	8424.89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8% • 한-중 FTA 1.6% • 한-EU FTA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8% • 한-중 FTA 0% • 한-EU FTA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8% • 한-중 FTA 2.4% • 한-EU FTA 0%
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소호의 용어	기타 가정형기기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기기

2) 품목분류 검토

• 제품1의 검토관세율표 8479호에서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제 8479호에는 공기가습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물품은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 하여 공기 중으로 뿜어내도록 하는 초음파식 가습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가정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847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하여 제 8479.89-1090호로 분류합니다.

*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1 / 2021.01.13.)

• 제품2의 검토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s)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s)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85류 주 4호에서 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중량이 20KG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물품은 중량 3.1KG의 초음파식 가습기로서 제품 내부에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그 형상과 규격으로 보아 가정용 전기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제 8509.80-9000호로 분류합니다.

• 각 제품을 8424.89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제품1과 2의 물품은 가습을 위하여 액체를 공기 중으로 분무하는 기기입니다. 가습과정에 '분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보다 공기의 습도를 높이는 '가습'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동 물품은 제품의 목적에 따라 '공기가습기'를 규정하고 있는 8479호나 8509호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무에서의 유의점

동일한 가정용 가습기더라도 8479.89호에 분류되는지, 8509.80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물품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양 세번은 한-중 FTA 적용 시 세율이 상이하므로 품목분류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 전동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가습기를 8509.80호로 분류, 0%의 한중 FTA를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사후 관세 추징)

3. 관련 유사 제품의 분류

- 1) 기계식 기화가습기 - 제8479.89-1090호2) 단순 필터 재질의 특성으로 가습하는 물품 - 필터의 재질에 따라 분류3) 가습 및 제습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 제8479.89-10104)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 제8415호5) 곡물가습기(가열장치를 갖춘 것 포함) - 제8437호

* 상기 유사제품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작동원리 및 용량 등 세부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Global Customs Insigh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의 對러 제재

I. 개요

2022년 2월 25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이를 구축 및 확장해오고 있다. 총 5차에 걸친 제재를 발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금지가 포함된 추가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6차 제재안은 EU 회원국간의 원유 수입금지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여 회원국들의 동참 의지 등에 따라 제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02. 26, EU는 수출 제한 조치를 발효하여 제재에 규정된 수출 제한 대상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은 관련 면제 또는 허가 예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고,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EU 회원국은 對러 수출을 이행하여서는 안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러시아에 제한 없이 판매, 공급, 양도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EU의 수출 제재 규정은 수출하려는 품목이 EU 産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또는 러시아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양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법인의 자회사가 EU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해당 자회사는 EU의 제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비EU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러시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경우, 이러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EU 영토를 통한 경유를 금지하므로 EU 국가를 통해 제3국 간에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II. 제재 주요 내용

'22. 02월,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외국 자금 접근의 차단, 무기, 레이저 및 우주산업 등 첨단부품의 對러 수출통제 등 제재 단행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 기업을 포함하여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22.02.27, 3차 제재의 일환으로 EU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 금융 분야 이외의 제재조치로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등의 제재를 포함하였다.

'22년.03.15, EU는 상품 수출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4차 對러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는데, 판매가격 EUR 300 이상인 고가 사치품 및 EUR 50,000 이상 자동차의 對러 수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석탄, 가스, 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지,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3개월 유예 기간 후 적용)하고, 한국 포함 9개국과 EU 및 G7 회원국은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WTO 최혜국대우 박탈 합의는 참가국이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지하는 등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22.04.05 EU는 러시아의 석탄 수입,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 금지, EU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LNG 관련 기술, 기타 전자 및 운송 장비 등 연간 총 EUR 100억 상당의 EU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5회 제재안에 이어 EU는 원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6차 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제재 범위, 도입 시기, 각 회원국의 동참 의지 등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수입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안내

개요

4월 19일부로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에 신규품목이 HS 기준 94개가 추가되었고 예상오류 통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는 2020년부터 신고 정확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배포하고 있으며,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HS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는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오류 통보를 받게되어 정정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가이드에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 나 현

관세사

tk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수입신고 가이드 추가 물품

수입신고 가이드에 추가된 94개의 품목은 72~73류의 스테인리스강 등 철강의 일차제품이며, 다음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이드 포함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 7209, 7210)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7213, 7214, 7215, 7216)
- 스테인리스강의 판(7219)
- 스테인리스강의 봉(7220)
- 스테인리스강의 기타 봉, 형강(7221)
- 기타 합금강 판(7225, 7226)
- 기타 합금강의 열간압연한 봉(7227)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형강(7228)
- 철강(비주철제)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7304)
- 철강(비주철제)로 만든 기타 봉합한 관(7306)

주요 기재 필요 사항

상기 추가된 품목의 수입 신고서 모델·규격 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델명 : 모델명 있는 경우 기재
- 가공상태 : 물품의 가공상태를 확인하여 기재 예) HOT/COLD DRAWN(열간/냉간 인발), HOT/COLD ROLLED(열간/냉간 압연), HOT/COLD EXTRUDED(열간/냉간 압출), FORGED(단조), PLATED(도금), PAINTED(페인팅한 것) 등
- 형상 : 물품의 형상을 기재 예) SHAPE: PLATE(판), SHEET(시트), PIPE(관), BAR(봉), H SECTION(에이치형강), WIRE(선), IN COILS(코일 모양인 것) 등
- 사이즈 : T(두께), H(높이), W(폭), D(지름), L(길이)를 확인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예) PACKING: 1MT/ROLL 등

- 품질검사증명서(권고) :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MTC: Mill Test Certificate) 번호 기재
- 인장강도 : 해당하는 경우, 인장강도를 메가파스칼(MPA) 단위로 기재
- 재질 :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재질을 기재 예) STEEL(강), ALLOY STEEL(합금강), STAINLESS STEEL(스테인리스강) 등

수입신고 가이드 미준수에 따른 제재

수입신고 가이드는 2020년 1월 최초 배포한 이후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700개의 품목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1,974개의 품목에 대하여 작성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가이드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가이드에서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재질, 성분, 사이즈, 가공상태,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가이드를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접수 후 전자문서로 가이드 미준수 사항을 예상오류 통보서의 형태로 통보하며, 이후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상오류 통보 안내 결과에 따른 정정 시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하는 등 현재까지는 사실상 큰 제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를 준수하는 신고 문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선세관의 수입 담당자들은 접수된 수입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가이드 미준수 사항을 발견시 신고 수리전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수입신고 가이드를 준수하여 기재요령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통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나 이는 제도 확대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가이드에 품목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는 HS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 신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수입하는 품목이 해당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인지 관심을 가지고, 해당 품목인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외 수출처로부터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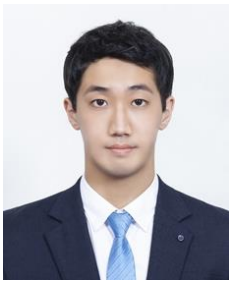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제·개정 이유

-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김 태 경

관세사

tk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외국환거래 자문
- 무역거래 자문

2. 주요 개정내용

- 가. (본문)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제28조)
- 나. (본문)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제30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8조)
- 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및 표9(특정수입물품의 산지)에 반영(별표8, 별표9)

[별표8 일부 개정 내용]

84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5 , 8487
85류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4 ,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549
87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 8715, 8716
88류	8806

라. (별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호)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발급용도		
③수출(입금)일자	④매입번호	⑤품명	⑥수출실적	⑦비고	
⑩ 증명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명권자 (인)					
(신설) 첨부서류 : 외화로 표기된 거래상품명세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증명 신청서에 한함)					

2812-281-02411민
'98.1.12.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